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61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614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가단15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I(변경전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6. 26.

판결 선고 2020. 7. 17.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가단15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2. 접수 제1708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소유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16. 접수 제27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인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인 3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경 E에게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78,48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 상담을 하였다.

나. E은 2017. 11.경 원고의 알선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회사에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판매 수당으로 392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E은 2017. 11.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2017. 11.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8. 5. 30.까지도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3,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당 반환 요구에 따라 2018. 7. 7.에 312만 원, 2018. 7. 8.에 80만 원 합계 392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E에게 3,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7. 18.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E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된 것은 2018. 5. 30.까지 토지허가구역을 해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매매계약 해약의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E과의 매매계약을 성립시킨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 392만 원을 원고로부터 환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금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3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 금원을 송금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92만 원을 지급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에게 일정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의 매매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원고가 매매 상담을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때부터 이에 관하여 원고, E 및 피고 회사 사이에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E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원고가 알선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피고 회사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반환된 유사한 사례에 다른 상담원으로부터는 수당을 반환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의 상담 과정 및 매매 조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와 매매대금의 반환 정도, 각 상담원의 수당 지급 및 반환 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지상목

판사고진홍

판사조정민

별지